



보도자료

11월 12일(월) 건강심 종료 후

배 포 일	2018. 11. 12. / (총 6매)		담당부서	보험급여과 예비급여과
MRI 건강보험 적용 확대 관련 적정 수가 보상 방안	과 장	손 영 래	전 화	044-202-2670
	과 장	이 중 규		044-202-2730
	담당자	강 준 혁		044-202-2667
	담당자	이 동 우		044-202-2733
① 고도비만수술 건강 보험 적용 ② 시간제 간호사 인력산정 기준개선 ③ 연속혈당측정용 전극(센서) 급여 확대	과 장	이 중 규		044-202-2730
	① 담당자	이 동 우		044-202-2733
	② 담당자	이 선 식		044-202-2745
	③ 담당자	주 철		044-202-2731

<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>

제1형 당뇨병환자 연속혈당측정용 전극(센서) 급여 확대, 고도비만수술 건강보험 적용 등

-보건복지부, 제18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(11.12) -
- 간호인력의 경력단절 방지 및 지속근무 유도를 위해 시간제 간호사 인력산정 기준 합리적 개선 -

- ① 제1형 당뇨병환자에게 연속혈당측정에 필요한 기기의 소모품인 전극(센서) 구입비용을 건강보험 요양비로 지원한다.
- ② 고도비만 환자에게 치료적 목적으로 시행하는 각종 수술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.
- ③ 시간제 간호사의 간호관리료 차등제 인력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정규직 채용도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.
- ④ 뇌·뇌혈관·특수검사 MRI 건강보험 확대 적용(10.1일)의 후속 조치로서, ①신경학적 검사 수가 개선, ②중증 뇌질환 수술 수가 개선 등 의료기관의 손실에 대한 적정 수가보상 방안을 실시한다.

- 보건복지부(장관 박능후)는 11월 12일(월)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 위원회(이하 '건정심', 위원장 : 권덕철 차관)를 열어, △고도비만수술 건강보험 적용, △MRI건강보험 적용 확대 관련 적정수가 보상 방안을 의결하고, △연속혈당측정용 전극(센서) 건강보험 급여지원, △시간제 간호사 인력산정 기준 개선방안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.
- 각 안전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.

< 연속혈당측정용 전극(센서) 건강보험 급여지원 >

- 지난 해 11월,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발표한 '소아당뇨 어린이 보호 대책' 후속조치로 제1형 당뇨병으로 연속혈당측정기를 사용하는 환자에게 필요한 소모품인 연속혈당측정용 전극(센서)*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지원한다.

* 연속혈당측정기는 피부에 체내 혈당수치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부착하여 실시간으로 혈당변화량을 측정해 알려주는 기기

-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은 판매단가가 고가(약 7만~10만 원/주)로 그간 기기를 사용하는 당뇨환자들에게는 경제적 부담이 되어왔다.
- 이에, 당뇨환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 및 보장성 강화를 위해 요양비 급여품목에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을 추가한다.

- 급여 기준액은 전극의 사용주기를 고려하여 1주당 7만 원으로 하고, 환자는 기준액 또는 실구입가 중 낮은 금액의 30%만 부담하면 된다.

* 연간(52주) 1인당 약 255만 원 부담 완화

- 지원대상은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제1형 당뇨병환자이며, 대상자 확대는 향후 연구용역 등을 통해 질환의 급여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.

□ 이번 급여 확대에 당뇨환자에게 지원되는 소모성재료는 총 7종*으로 늘어나게 되었으며, 연말까지 관련 고시개정을 거쳐 이르면 2019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.

* 현재(6품목) : 혈당측정검사지, 채혈침, 인슐린주사기, 인슐린주사바늘, 인슐린펌프용 주사기, 인슐린펌프용 주사바늘

* 추가(1품목) : 연속혈당측정용 전극

< 고도비만수술 건강보험 적용 >

□ 고도비만 환자에게 치료적 목적으로 시행하는 각종 수술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.

○ 그동안 통상 비만의 경우 식습관 변경이나 적극적인 신체운동 등 주로 개인의 생활습관 개선이 우선시되는 영역으로 판단하여 건강보험은 비만으로 인한 합병증 진료(고혈압, 당뇨병)에 한하여 적용되어 왔었다.

○ 이번,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비만 수술은 ①미용목적의 지방흡입술이 아닌 위·장관을 직접 절제해 축소시키거나, ②이를 구조적으로 다르게 이어 붙여 소화과정 자체를 변화*시키는 수술이다.

- 대상은 생활습관개선이나 약물 등 내과적 치료로도 개선이 되지 않는 일정 기준 이상의 비만환자**이다.

* 위소매절제술, 문합위우회술(루와이형, 단일), 십이지장치환술, 조절형위밴드술 등

** 체질량지수(BMI, 몸무게(kg)를 키(m)의 제곱으로 나눈 값) 35kg/m² 이상 또는 BMI 30kg/m² 이상이면서 동반질환(고혈압, 당뇨병 등)이 있는 환자

○ 또한, 불필요한 수술을 방지하고, 수술 전후 비만환자 상태에 대한 통합적인 진료를 독려하기 위해 집도의 및 내과 정신과 등 관련 분야 전문의가 함께 모여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방침을 정하는 경우 산정하는 '비만수술 통합진료료'도 신설할 예정이다.

- 이에, 종전에는 비만수술을 받을 경우 환자 본인이 약 700~1,000만 원을 전액 부담해야 했으나, 금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약 150~200만 원 수준*으로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.

* 수술종류, 입원기간, 시행한 검사 및 사용 약제 등에 따라 개인별로 상이할 수 있음

< 시간제 간호사 인력산정 기준 개선 >

- 현행 간호관리료 차등제 인력산정 기준에서는 시간제 간호사의 경우 전일제 간호사에 비해 근무시간 대비 인원이 적게 인정되었다.

* (예시) 전일제는 40시간 이상 근무시 1명 인정, 시간제는 20시간을 근무해도 0.4로 인정

- 이에, 시간제 간호사의 근무시간에 따라 합리적으로 인력이 산정될 수 있도록 시간제 간호사 근무시간 범위를 세분화하였다.

* <참고> 시간제 간호사 인력산정 기준 개선 내용

- 아울러, 시간제 간호사가 비정규직으로 고용되지 않도록 병원급 의료기관의 정규직 간호사 채용 의무 비율을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.

* 현재 상종·종합 : 80%이상, 병원급 이하 : 50%이상 → 병원급이하도 80% 이상

- 변경된 기준은 행정 예고 등을 거쳐 12월에 고시 개정을 추진, 준비기간을 거쳐 2019년 4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.

< MRI 건강보험 적용 확대 관련 적정수가 보상 방안 >

- 지난 10.1일 뇌·뇌혈관·특수검사 자기공명영상법(MRI) 보험 적용 이후 기존 비급여 가격 대비 보험가격이 낮아 손실을 보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 추가적인 손실보상을 실시한다.

- 보건복지부는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(9.13.)에서 “뇌·혈관·특수검사 MRI 건강보험 확대 적용 방안”을 통해 일부 손실보상 방안*에 대해 올해 하반기 내로 후속조치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.

- * 2회 이상 복합촬영 보험수가 산정(최대 200%) 제한 해소, 평형 기능검사 수가 인상 등 일부 손실보상방안은 10.1일 뇌·뇌혈관·특수검사 MRI 급여화와 함께 실시 중
- 먼저, **신경학적 검사***를 **재분류(현재)일반 → 개선)일반, 단순)하여** 필요한 경우 **뇌졸중이나 신경근육질환 증상 환자들에게 신속하게 시행한 경우에도 급여 산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다.**
 - * 신경계통의 이상유무를 객관적으로 가려내기 위해 의사가 직접 환자의 뇌신경 기능, 감각기능, 근력, 반사자율신경, 보행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진찰하는 검사
- **신경외과 전문의가 시행하며 미세현미경을 사용하는 고도의 중증 뇌질환 수술(뇌동맥류 수술 등 47개 항목)에 대해 수술의 난이도와 의사 업무량을 고려하여 상대가치점수의 5~15%를 가산한다.**
- **혈전용해제 약물(Alteplase*)을 투여하는 초급성 뇌경색환자(연간 4,600여 명)를 대상으로 출혈 등 응급사태 신속 대처, 치료효과 증진을 위해 뇌졸중 척도검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집중 모니터링하는 환자안전 관리 수기도 마련하였다.**
 - * 혈액응고에 의해 형성된 덩어리를 녹이는 약물로써 초급성 뇌경색증 환자에 대한 유일한 치료방법이나 심한 뇌출혈 등의 부작용으로 숙련된 의료진의 환자관리가 필수적
- **향후,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12월 이후 손실보상 방안을 실시할 계획이다.**

참고

시간제 간호사 인력산정 기준 개선 내용

- (산정기준 개선) 인력 산정을 위한 근무시간 범위를 세분화하여(8→4시간), 주당 근무시간과 산정인원이 좀 더 비례하여 인정될 수 있도록 합리화

* (예시) 20시간 근무 시간제 간호사 : (현재) 0.4명 인정 → (개선) 0.5명으로 인정

< 시간제 간호사 인력 산정 기준 개선방안 >

< 현행 >				< 개선방안 >				
구분	주당 근무시간	산정인원		구분	일반		야간전담	
		일반	야간전담		주당 근무시간	산정인원	주당 근무시간	산정인원
전일제	40h 이상	1명		전일제	40h 이상	1명		
단시간	32h 이상 40h미만	0.8명	1.6명	→	36h 이상~ 40h 미만	0.9명	32h 이상	1.6명
	24h이상 32h 미만	0.6명	1.2명		28h 이상~ 32h 미만	0.7명	28h 이상~	1.4명
16h 이상 24h 미만	0.4명	0.8명	20h 이상~ 24h 미만		0.5명	20h 이상~	1.0명	
			16h 이상~ 20h 미만		0.4명	16h 이상~	0.8명	

- (정규직 채용 유도) 병원급의 정규직 간호사 고용 비율을 현행 50%→ 80%로 상향 조정하여 정규직 채용 확대 유도

< 정규직 근무 간호사 의무고용비율 >

< 현행 >		< 개선 >	
구분	정규직 근무 간호사 의무고용비율	구분	정규직 근무 간호사 의무고용비율
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	80%	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	80%
병원급 이하 요양기관	50%	병원급 이하 요양기관	<u>80%</u>